

日本雷미콘產業의 團體 조직에 관한 考察

崔 在 眞 <檀國大 講師·工學博士>

〈目 次〉

I. 中小企業 관련 各種 法令	
1. 金融 등에 관한 法律	② 事業
2. 中小企業 構造에 관한 법률	③ 設立要件
3. 設備, 경영, 技術에 관한 법률	2. 工業組合
4. 從業員 복지에 관한 법률	① 基準 및 原則
5. 需要증진에 관한 법률	② 事業
6. 組織制度에 관한 법률	③ 組合員
II. 中小企業 組織制度	④ 設立要件
1. 協同組合	⑤ 出資制度
① 基準 및 原則	⑥ 規制 및 制限命令

I. 中小企業 관련 各種 法令

雷미콘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雷미콘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300인 이하」이거나 또는 「자본금이 1억円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 경우, 종업원 숫자와 자본금 어느 한쪽이 해당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종업원수가 500인이라도 자본금이 1억円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며, 또 자본금이 100억円이라도 종업원수가 50인이면 중소기업이 된다. 참고로 보면 도매업의 경우는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자본금 3,000만円 이하 [법률

에 따라서는 자본금 1,000만円 이하]가 중소기업이며,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종업원 50인 이하, 자본금 1,000만円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제약에 의한 불리함을 시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존중하고 그 자주적 노력을 조장하며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產業構造를 高度化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사명을 감안하여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부응하며 기업간에 生產性 등의 제반 격

차가 시정되도록 중소기업의 生產性 및 거래조건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여 아울러 중소기업 종업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中小企業基本法(1963년 법률 제154호)을 근간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들 중 레미콘 산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 있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金融 등에 관한 法律

① 中小企業金融公庫法 (1953년 법률 제138호)

중소기업 및 工業組合 · 協同組合 · 協業組合이 하는 사업의 전통에 필요한 長期資金으로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통하기 곤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國民金融公庫法 (1949년 법률 제49호)

독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또 적절한 사업계획을 가진 자로서 은행 기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응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商工組合中央金庫法 (1936년 법률 제14호)

工業組合 · 協同組合 등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출자한相互組織에 의해 出資者인 단체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대부, 어음할인, 當座貸越債務保證 등을 행함으로써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中小企業信用保險法 (1950년 법률 제264호)

및 信用保證協會法 (1953년 법률 제196호)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債務保證에 대하여 中小企業信用保險公庫와 信用保證協會 외의 사이에 普通保險, 特別小口保險, 公害防止保險, 新技術企業化保險, 近代化保險, 倒産關連保證의 特例, 不況業種特別保證의 特例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⑤ 中小企業倒產防止共濟法 (1977년 법률 제84호)

중소기업자, 企業組合, 協業組合, 協同組合이 중소기업자의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共濟制度를 운영함으로써 거래처기업이 도산하여 의상판매 채권 등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本制度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들이 미리 적립한 부금의 10배를 한도로 無利子 · 無擔保 · 無保證人으로 共濟金을 대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中小企業 構造에 관한 法律

① 中小企業事業團法 (1980년 법률 제53호)

中小企業 構造의 高度化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指導, 資金의 대부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 관리의 합리화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研修, 指導事業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中小企業近代化促進法 (1963년 법률 제64호)

중소기업의 업종별 균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實態調查에 기초하여 중소기업 균대화 계획을 정하는 동시에 그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일정의 助成措置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下請中小企業振興法 (1970년 법률 제145호)

下請거래關係를 균대화하여 下請關係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자주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또 그 능력을 더욱 효과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下請中小企業의 전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下請中小企業의 균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下請企業振興協會에 의한 下請거래 주선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中小企業事業轉換對策 臨時措置法 (1976년 12월 15일부터 10년간의 時限立法)

최근에 貿易構造 기타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가 하는 사업의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자, 企業組合, 協業組合, 協同組合 또는 協同組合連合會, 工業組合 또는 工業組合連合會 등이 작성한 사업의 전환계획을 都道府縣知事が 인정한 경우, 中小企業信用保險法에 의한 轉換關連保證의 特例, 事業轉換에 있어서의 減價償却資產의 폐기 또는 양도의 경우의 特

例，事業轉換에 있어서 合併，現物出資를 한 경우의 課稅의 特例 등을 받을 수 있다.

3. 設備·經營·技術에 관한 法律

①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1956년 법률 제115호)

중소기업자의 設備의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주는 都道府縣에 대하여 국가가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대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中小企業設備近代化資金의 貸付事業, 中小企業構造改善準備金制度를 정하고 있다.

② 中小企業指導法(1963년 법률 제147호)

국가, 都道府縣 및 中小企業事業團이 행하는 중소기업 지도사업을 계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합리화 및 기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從業員 福祉에 관한 法律

① 最低賃金法(1959년 법률 제137호)

임금이 저렴한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 직업의 종류, 지역에 따라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함으로써 勞動條件의 개선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中小企業退職金共濟法(1960년 법률 제160호)

중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의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退職金共濟制度를 확립하고 이들의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중소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雇用促進事業團法(1961년 법률 제116호)

노동자의 技能習得 및 향상, 지역간 및 산업간 이동의 원활화 기타 취직을 돋는 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5. 需要增進에 관한 法律

官公需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受注의 확보에 관한 法律(1966년 법률 제97호)

국가가 중소기업자의 官公需受注機會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소기업자

가 공급하는 물건 등에 대한 수요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受注機會를 증대시키기 위한 努力義務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의 계약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組織制度에 관한 法律

① 中小企業團體의 組織에 관한 法律(1957년 법률 제185호)

중소기업자가 협동하여 경제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組織, 또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組織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경제활동 기회의 확보와 경영의 안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工業組合, 協業組合 등의 組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1967년 법률 제181호)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또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協同組合 組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中小企業組織制度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개개의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국내외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存立基盤은 크게 변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종래부터의 中小企業性에 기초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경영기반을 뒤흔드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여 企業本質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經營資源인 人材, 財務力, 技術力 등이 열등하며 안정성장 경제로의 移行, 公害防止나 에너지 절감 등의 문제에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자가 組織

화를 도모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

組織化란 중소기업자가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경영의 합리화·근대화·고도화를 협동의 힘으로 달성하기 위하여複數의 사업자가 단결하는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자 組織制度로서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① 중소기업자가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협동하며 사업을 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中小企業等 協同組合法」에 기초를 둔事業協同組合, 企業組合, ②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을 協業에 의해 生產性 향상을 폐하며 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그 업계 전체의 사업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協業組合, 工業組合 등이 있다.

1) 協同組合의 基準 및 原則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협동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에 의한 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①~④의 기준은 조합이 독가점방지법의 適用除外團體로서의 취급을 받을 要件이기도 하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① 조합원(連合會의 경우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조합은 조합을 구성하는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일관된思想이며 다른 기준 및 원칙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②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고 또 탈퇴할 수 있을 것

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基調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 및 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임의이며 강제로 가입이나 탈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③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은 평등할 것.

조합은 人的인 결속체이며 공동으로 경제사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물

이상의 出資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共同經營體로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경영참여권의 취득과 出資金에 대한 配當受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出資한 몫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모두 평등히 1개가 주어지며 이 점은 物的인 결합체인 株式會社나 有限會社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④ 組合의 剩余金의 配當은 주로 組合事業의 利用分量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出資額에 따라 배당할 때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사 등의 营利法人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자신을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의 剩余金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賦課金, 使用料, 手數料 등이 큰 액수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합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法人인 이상 그러한 성격의 剩余金은 본래의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法은 주로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조합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로서 出資金을 보유하고 이것을 財產의 기초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운영에 미치는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부터 出資配當을 인정하는 개념이 생기지만 剩余金의 성격이 앞에서 기술한 것인 만큼 出資配當은 종속적인 것이 되며 더구나 주식회사와 같이 무제한으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할 이내에서 定款에 정한 한도로 되어 있다.

⑤ 조합은 사업에 의해 조합원에게 직접봉사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조합은 조합원된 중소기업자의 상부상조 정신을 基調로 하는 공동경영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합자체의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직접 조합원에게 효과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의 조합원 만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해

서는 않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協同組合의 사업

① 生産·가공·판매·구매·보관·운송·겸 사 기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共同施設

이들 사업은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또 기본적인 것으로 그 시설에 의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의 부분적인 企業合同을 하거나 원가의 인하, 品質向上 均質化,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共同施設이란 공동사업용의 物的施設(기계설비·건물등)은 물론이며 이들 物的施設을 운영하여 행하는 사업활동과, 物的施設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일반 경제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것인 한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 관계 없는 다른 사업을 하거나 관계가 있어도 조합원이 이용하지 않고 제3자 만을 상대로 하여 독자적인 입장에서 운영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 협동조합법에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법률에 特則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규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共同運送事業을 하는 경우에는 道路運送法에 기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합이 독자적인 標章(단체의 상징이 되는 기호)을 제정하여 조합원의 차량에 부착하게 하며 이것을 차량의 바깥쪽에 부착하게 할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해 두지 않으면 않된다.

또 이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가점방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관계로 부당한 가격인상 또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의 사업제한을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의 亂競·赤字受注 등 불건전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生產制限, 價格協定 등이 가능한데 價格協定事業을 하는 경우에는 行政廳에의 신고가 필요하다.

②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 및 조합원을 위하여 하는 借入事業.

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다.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생활자금이나 타인으로의 轉貸資金을 대부해 줄 수는 없다. 더욱이 조합원에게 사업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합이 借入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합이 자금을 借入하는 경우의 상대는 商工組合 中央金庫 등이 일반적인데 금융기관 만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조합원으로부터의 借入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債務를 보증하거나 또는 보증한 금융기관의 債權에 대하여 위탁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福利厚生에 곶한 사업

조합은 공동경영체로서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반면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基調로 하는 人的인 결합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합원의 私生活面에 있어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활용품의 공동구매나 오락시설 또는 위생시설의 설치, 조합원의 사망·상해·질병에 대한 위로금 지급, 화재 등의 共濟事業도 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및 기술의 개 선향상 또는 조합사업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 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영방법이나 기술면에 있어서 조합이 공동시설 등의 운영에 의해 보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사업에 관해 생산관리·판매관리·회계관리 등의 경영면이나 품질관리 등의 기술면의 지도에 의해 합리화를 촉진하며 조합원이 조합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組合制度나 組合事業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⑤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團體 協約의 締結事業

중소기업자인 레미콘 업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힘의 관계로부터 각종 불리한 조건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합에 의해全조합원이 보조를 맞추어 사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것을 어지럽게 하면 조합운영상 큰 폐단이 된다.

3) 協同組合의 設立要件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4인 이상이 發起人이 되는 것이 필요하며 조합원은 하나의 뜻 이상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發起人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것을 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여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의 승인·사업계획의 설정 등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정관에 정한 사업을 관장하는 行政廳(레미콘 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의 지역이 하나의 都道府県내인 경우에는 都道府県知事,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地方通商產業局長에게 신청)의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行政廳은 設立手續 또는 定款 혹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기반이 결핍되어 있는 등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조합의 出資總額과 하나의 뜻의 금액, 조합의 관할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工業組合

中小企業團體의 조직에 관한 법률(일반적으로 「團體法」이라 한다)은 195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이 제정된 당초의 목적은 「中小企業의 過當競爭을 극복한다」는 것이었는데 1962년 개정에 의해 不況事態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업계 전체의 改善發達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위 同業組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

다.

1) 工業組合의 基準 및 原則

工業組合은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加入脫退가 자유로울 것, 議決權이 平等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요건은 조합이 조합자체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資格事業者の 經營安定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資格事業者」란 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 뿐 아니라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결국, 레미콘 업계의 경우에는 공업조합의 定款에 표시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전체 업자를 말한다)

工業組合에의 加入脫退의 任意라고 하는 것은各種의 組合立法이 모두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공업조합이 人的인 결합체인 한 조합의 승낙 없이 가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組合加入에는 타당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탈퇴도 제한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유일한例外로서 法에 기준하여 加入命令이 발동된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적으로 공업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또 명령의 유효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다.

工業組合에 있어서의 議決權 및 選舉權은 出資한 뜻의 숫자나 사업규모(자본금의 액수, 종업원의 수, 시설능력 등)로 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이며 1人 1票이어야 한다. 이것은 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전제로 되어 있다. (工業組合連合會의 회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일정기준(全國레미콘工業組合의 경우는 회원인 공업조합의 加入事業者 40個社)하에서 조합원수에 따라 2표 이상(全國레미콘工業組合連合會의 경우는 40個社마다 1표)의 의결권, 선거권이 주어져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 공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봉사,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工業組合의 事業

① 資格事業에 관한 指導 및 教育

공업조합은 그 業種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總合的 改善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업으로서 資格事業 즉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定款에 정한 사업의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 指導敎育事業은 단순히 조합원 만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건 아니건 간에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전원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교육을 행하는 것이다.

資格事業에 관한 「指導」란 資格事業 全体 및 個別企業經營 등에 대하여 그 본연의 자세, 장래의 방향 등에 대하여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資格事業에 관한 「敎育」이란 일정기간 계속하여 資格事業에 관한 경영 및 기술에 대하여 비교적 미숙한 사업자 및 業種에 종사하고 있는자의 精神上, 身體上의 諸性能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② 資格事業에 관한 情報 또는 資料의 수집 및 제공

工業組合이 소위 同業組合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경우 그 상품의 장래 需要動向, 同業者의 활동상황,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지식 등 그 사업활동에 관한 여러 정보와 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보와 자료는 대기업의 경우 自社의 강력한 조사망을 통하여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工業組合이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된다.

③ 資格事業에 관한 調査研究

이 사업도 指導·敎育事業이나 정보·자료수집과 같은 취지에 의한 것으로 그 업계의 자세, 장래의 방향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④ 安定事業

安定事業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工業組合의 地區內에서 資格事業을 하는 中소기업의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商行爲가 원활하지 못하며 해당부분의 경영이 현저히 불안정하게 되었거나 또는 불안정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위 不況事態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얻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⑤ 合理化事業

레미콘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폐하기 위해서는 工業組合은 단지 不況카르텔(安定事業)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카르텔(合理化事業)을 행할 필요가 있다.

工業組合이合理化事業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인하, 능률증진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⑥ 共同經濟事業

공업조합이 행하는 共同經濟事業은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며 공업조합의 공동경제사업 실시여부는 임의로서 특별한 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공업조합이 공동경제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조합은 出資組合(조합원이 공업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조합)이어야 한다. 공동경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것은 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한 項을 참조하기 바란다.

ⓐ 生産·가공·판매·구매·보관·운송·
검사 기타 종합원 사업에 관한 공동시설

ⓑ 조합원에 대한 事業資金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 및 조합원을 위한 借入事業

ⓒ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 까지의 사업에 부대한 사업

⑦ 組合協約의 締結事業

공업조합도 또 그 대부분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자이며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인 대기업자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과당경쟁으로 추방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감

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공업조합이 調整事業이나 共同經濟事業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대인 기업자의 충분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때문에 공업조합에 組合協約 締結事業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組合協約中 安定事業 또는 合理化事業에 관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와 체결하는 자는 通商產業長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독가점방지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組合協約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원활히 되도록 특정의 상대에게 應諾의 義務를 과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通商產業長官이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⑧ 特殊契約의 締結事業

공업조합은 지구内에 있어서 이미 不況事態가 발생한 경우에는 不況카르텔을 실시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資格事業의 개시나 확대에 의해 급속히 不況事態를 초래하게 되거나 또는 현재 발생해 있는 不況事態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긴급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공업조합이 그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資格事業의 개시 또는 확대를 정지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취지의 계약(特殊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特殊契約이 가능한 공업조합은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전국 및 地區內에서의 資格事業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을 것.

ⓑ 그 地區內에서 資格事業을 하는 중소기업자의 3분의 2이상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을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공업조합이 특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을 했을 때는 상대측 대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교섭에 응해야 한다. 상대측이 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교섭에는 응했지만 그 교섭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았을 때, 당사자 쌍방 또는 한쪽이 通商產業長官에 대하여 알선 또는 調停을 신청할 수 있으며 通商產業

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中小企業 調停審議會 또는 中小企業分野等 調整審議會에 자문을 얻어 알선 또는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계약은 通商產業長官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그 허가를 받음으로써 독가점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3) 工業組合의 組合員

공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는 자는 그 地區內에서 資格事業(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이지만 공업조합이 그 地區內에서 資格事業을 하는 중소기업자의 안정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행해질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관으로 정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공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그 地區內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중소기업 이외의 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그 地區내에서 資格事業을 행하는 者

4) 工業組合의 設立要件

① 組織率

공업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종대성으로부터 多數業者の 공통의식이 존재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조합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자들의 가입도 인정되며 그 지역내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공업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② 中小企業者率

대기업자나 협동조합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공업조합은 그 사업활동의 양, 사업자의 수 및 조합의 내부구성 등 어느 면으로부터도 중소기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음 3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전국에 있어서의 사업활동의 상당부분(出荷高의 약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사업을 資格事業으로 할 것.

ⓑ 그 지구내에서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자 일 것.

④ 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자
일 것.

③ 地 區

공업조합은 원칙적으로 1 또는 2 이상의 都道府県의 구역을 地區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이 인정된다.

④ 地區重複禁止

공업조합은 업계 전체의 改善發展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調整事業 등은 조합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수량, 거래방법, 설비, 가격 등의 제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대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통일된 뜻을 가지고 공통된 기준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같은 업종에 대하여 1地區 1組合을 원칙으로 하며 地區의 중복은 금지되어 있다.

⑤ 發起人數

공업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4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發起人이 되어야 한다. 또 공업조합은 通商產業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出資制度

공업조합 및 공업조합연합회에서 出資制와 非出資制가 있는데 指導教育 調査事業 또는 調整事業 만을 행하는 경우는 非出資組合에서도 사업을 행할 수 있지만 共同經濟事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出資組合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規制 및 制限命令

공업조합 또는 공업조합연합회가 그 지구내의 同業者의 자주적인 사업활동에 의해 不況事態의 극복 또는 경영의 합리화에 노력하여도 소수의 員外者에 의한 저해활동 등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그 사태를 방치해 두면 레미콘 업계 전체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 또는 합리화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며 그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通商產業長官은 加入命令, 事業活動規制命令 또는 設備新設 制限命令을 발동하여 사태극복을 꾀할 수 있다. *